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에 관한 규정

- 제 정 : 2011. 9. 1.
- 개 정 : 2012. 6. 29.
- 개 정 : 2014. 1. 21.
- 개 정 : 2021. 12. 1.
- 개 정 : 2022.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학문 및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체 연구학기”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력 향상과 학문 및 산업체 발전에 공헌하도록 직무 또는 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제3조 - 삭 제 -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학기 신청 자격은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연구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또는 직전 연구학기를 마치고 복귀한 후 연구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6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② 교원으로서 주요보직에 임명된 경우 보직기간 중에도 연구학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구학기기간은 보직임명기간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연구학기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휴직, 파견, 연수 등과의 관계) 통산 3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를 하였거나,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임용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 또는 임용제한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기산한다.

제6조(연구학기 기간 종료) 연구학기 중인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에 복귀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학기 기간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연구학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연구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③ 연구학기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④ 연구학기 교수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4-1-7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에 관한 규정

1. 연구학기 부여 회수
2. 최근 3년간 교수업적 실적
3. 최초 임용일자

제8조(연구학기 교원수 제한) 연구학기 교원의 수는 해당 학과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연구학기 교원의 수는 매학기 전체 전임교원의 20분의 1 이하로 한다.
2.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학과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연구학기 교원의 처우) ① 연구학기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 또는 복무 의무가 면제된다.

- ② 연구학기 기간 중이라도 교원 및 일반직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봉급,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지도수당 제외)을 전액 지급한다.
- ③ 연구학기 기간 중 강의료,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④ 연구학기 기간 중이라도 교수회의 출석, 의견진술 및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학기 교원의 의무) 연구학기 교원은 연구학기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귀신고서를 제출하고 복귀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학술논문 및 저서, 산학협력 결과물 등)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